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위탁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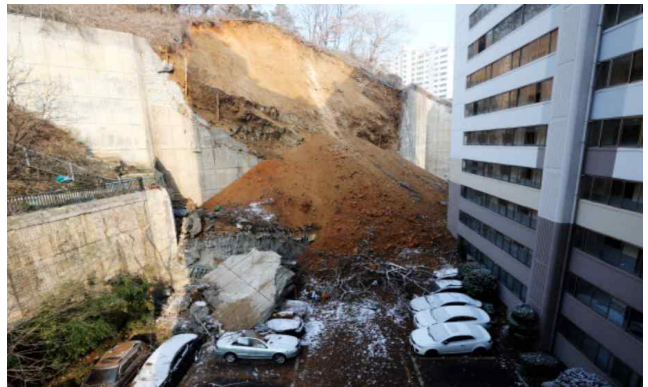
□ 개요

- 급경사지법 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만, 비전문가의 재해위험도평가로 인해 A~C등급의 급경사지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위험도 등급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파트 인공비탈면(옹벽) 등 : 재해위험도 B등급(재해위험 낮음)



<사당동 동작구 아파트 옹벽 급경사지>



<광주 대화아파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함

□ 위탁근거 및 필요성

○ 법적 근거

- 급경사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위탁 근거(※ 붙임 1 참조)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등의 작성·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위탁계약(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8.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필요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 필요

* 피해지역 중 A~C등급(약 84%)에서 주로 피해 발생, 신뢰성 문제 발생

<등급별 피해 현황(행안부, 2023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보고서)>

구 분	계(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352	10	8	208	7	29	90
A등급	14	1	-	6	-	3	4
B등급	89	2	1	47	-	9	30
C등급	191	1	5	132	3	13	37
D등급	58	6	2	23	4	4	19
E등급	-	-	-	-	-	-	-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급경사지법」제3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설립 허가 받은 국내 유일의 급경사지 전문기관임(※ 붙임 2, 3 참조)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21~'24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업무를 다수 수행(※ 붙임 4 참조)

○ 사업 추진의 신속성 필요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는 급경사지 특성상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 및 대비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수의계약)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위탁 대상

- 기관명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디펠리체 10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505-82-12007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4.8.14.),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4.7.31.)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급경사지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급경사지 실태조사 시행 근거 신설 (법 제5조의2, 영 제2조의3)

-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안부 및 시·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새로 확인된 급경사지는 시·군·구 및 관리기관이 관리
-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의 위치·규모, 비탈면유형,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
-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 원격탐사 병행 가능

나. 상시계측관리 대상 확대 (법 제8조)

- 급경사지 붕괴정후 감지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모든 급경사지에 상시계측관리 가능
 - (종전) 붕괴위험지역 → (개정) 전체 급경사지
- 상시계측관리 업무는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에 등록된 계측업자가 대행
 -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계측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상시계측관리 업무 수행 가능

다. 급경사지 관리대상 확대 (영 제2조)

-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과 최단거리가 3미터 이내인 인공비탈면의 경우 높이 기준을 3미터 이상으로 함
 - (종전) 5미터 이상 → (개정) 5미터 이상(주택 등 건축물과 최단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 3미터 이상)

라. 행안부, 지자체,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위탁 근거 신설 (법 제33조, 영 제15조의6 신설)

- (위탁가능업무)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 기준 관련 도서 작성·보급, 급경사지를 조성한 공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 시·군·구의 긴급안전조치 이행명령 내용 공개 (법 제17조)

-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자체 공보, 홈페이지 등에 내용 게재
- *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조치

바. 상시계측관리 업무담당자의 계속전문인력 실무교육 이수 (법 제30조)

- 관리기관 상시계측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계속 전문인력 실무교육 이수 의무화
- 부칙 제2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5.2.14.)에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사.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규칙 제2조)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고시해야 할 항목에 지형도면 추가
- (중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 **(개정) 관보에 고시**
- 부칙 제2조에 따라 기 고시한 붕괴위험지역의 경우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 ('24.10.31.)에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함

붙임 급경사지 관련 개정 법령 각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산지방재과장), 부산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전광역시(자연재난과장),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장), 광주광역시(자연재난과장), 울산광역시(자연재난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연재난과장), 경기도지사(북부안전특별점검단),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재난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대구교통공사사장, 대전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사장, 광주교통공사사장, 경기교통공사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이성건	시설사무관	정순환	재난검검과 과	장	과 전결	2024. 8. 9.
협조자	주무관	박선희	주무관	유동균	장	박정호	
시행	재난검검과-3535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5157	팩스번호	044-205-8935	/	kk100y2k@mail.go.kr	/	비공개(5)

제 2020-15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504호
3. 대표자
 - 성명 : 류지협
 - 생년월일 : 1967년 4월 17일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60, 339동 1502호
4. 사업내용
 -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기술의 개발
 -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허가조건 : <별지> 참고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힘내라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활용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주요 업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계측 및 점검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명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나. 근 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 협조사항 :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주요 업무 전파 조치

- 붙임 1.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활용 요청(공문) 1부.
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안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 서울특별시(산지방재과장), 부산광역시(재난대응과장),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장), 광주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장), 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장), 대전광역시(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재난관리과장), 경기도지사(북부재난안전과장), 강원도지사(재난복구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북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중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서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주무관	이동희	기술서기관	대결 2020. 12. 2. 차상화	과장	전경
협조자					
시행	재난경감과-4807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33호 재난경감과(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5157 팩스번호 044-205-8931 / flyaway777@korea.kr / 대국민 공개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229건 이상)

[2024.08.20. 기준]

연번	과업명
1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2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3	광주 제2순환도로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4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5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조사 의뢰
6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7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8	인천 서구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의뢰
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10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북문재~연성교차로간 도로)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팔조지구 등)해제 평가 의뢰
1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1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해제) 재해위험도평가 의뢰
14	급경사지정비 완료지구 재해위험도 평가의뢰
15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16	급경사지 일제조사 및 재해위험도평가 의뢰
1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조사 의뢰
18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지방도420호선 일부)
19	붕괴위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2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전지구, 고평지구) 해제 평가 의뢰
2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23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24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봉산리 축대 등 3개소)
25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위험도평가 용역
26	동촌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진단 용역
27	2023년 붕괴위험지역 해제조사 및 급경사지 실태조사
28	광덕초 외 7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29	학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
30	목포북교초 외 18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31	하늘내린유 외 12교 학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
32	학교 주변 비탈면 등 재해위험도평가 용역
33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괴산고, 충북비즈니스고)
34	남신초 외9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35	충주 관내 학교 주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36	가평초,단양고 주변 비탈면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평가
37	학교주변 비탈면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38	충청북도교육청 외 6기관 1교 주변 재해위험도평가용역
39	문상초외 22개소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40	삼양초외 4교(14건) 비탈면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41	내북초 외 5교 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평가 용역
42	충남 예산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43	홍성 농어촌공사 재해위험도 평가
44	논산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45	거창군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46	옥천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47	대전 동구청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48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49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의뢰(서천 일원)
50	제천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 평가의뢰
51	괴산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지구 재해위험도 평가
52	영천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53	농소리 급경사지(계룡 36) 재해위험도 재평가 의뢰
54	충주시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의뢰(석천지구)
55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사우2지구)(1개소)
56	장마철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57	성결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재해위험도 평가
5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헐티재 지구) 재해위험도 재평가
59	논산시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개척지구)
60	전주시 견훤로 붕괴위험지역 지정 재해위험도 평가
61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의뢰(지방도635호 일원)
6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의뢰(국지도68호선 일원)
63	옥천군 장계1지구, 조령2지구 재해위험도 재평가 의뢰
64	2023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재평가 용역
65	양지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66	창신고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67	신천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68	남강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69	원동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70	진해남중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71	본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요청
72	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73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주변 급경사지재해위험도 평가
74	우리 원 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75	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76	마산중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77	창원 반송초 주변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도 평가
78	창원동백학교 주변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도 평가
7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실태조사 의뢰
80	자은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81	진해배화유지원 주변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도 평가
82	양곡중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83	「구동절개지 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 재해위험도평가
84	남원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의뢰
85	양산교육지원청 주변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도 평가
86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실태조사 포함) 의뢰
87	수동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88	호암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89	지수중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90	창호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비탈면) 등 재해위험도 평가
91	고창고 외 11개교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92	김해제일고 주변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도 평가
93	인천 서구 관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의뢰
94	2024년 영천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95	옥천군 급경사지(안내면 등)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평가
.....	
229	경상여자고등학교 학교 용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